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도현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고 약정 금리를 공고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금고 약정 금리 공개 조항 신설(안 제11조제7항)
-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배점기준 및 세부평가 기준 등 개정
(안 별표 1 및 별표 2)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6년 3월 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
- 제출서식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오산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입법예고>공지)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31, · 팩 스 : 031)3036-8953
 - 전자메일 : blue6017@korea.kr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시장은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오산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제2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2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 평가기관 (4) - 국내 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8) - 총자본비율 (안정성) (6)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6) - 자기자본 이익률 (수익성) (5)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1)		
		21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8)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6) * 수시입출금식 예금: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3)		
		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8)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7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 * 금융위 등 채투자 평가결과 반영 가능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2)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제4조제2항 관련)

I.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5(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26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1)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의 조사자료 등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국외평가기관 (4점)

- 국내평가기관 (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2)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가장 최근의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

- 신용조사기관의 평가 등급에 따라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8점)

- 1)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2)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가)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나)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6점)

(다) 자기자본 이익률 (수익성, 5점)

(라)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1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1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8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6점)

- 공공예금 및 MMDA, 보통예금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 수시입출금식 예금 :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 정기예금 만기 후 이율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100%로 적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처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8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 최근 3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및 사고 등에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세입·세출 전산화, 자금운용 전산화, 각종 보고서 전산화, 시·도간 송금 전산화 등 금고 인프라를 비교 평가
- 금고 관리인력 비교 평가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및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국내·외 보안인증기관의 전산보안인증 결과와 금고 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OCR시스템 운영현황 및 실적과 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

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금융위 등 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가능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시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에 따른 협력사업비 출연 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단, 현금출연만 인정)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계획”으로만 평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금고의 지정절차) ① ~ ⑥ (생 략) <u><신 설></u>	제11조(금고의 지정절차)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시장은 금고 약정 개시 후 30</u> <u>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u> <u>출 및 예금 금리를 시 홈페이지와</u> <u>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u>